

위임장

수임인 (대리인)	성명	
	주소	

위의 사람은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중인가 법무법인 호수에서 공중인법 제56조의 2(어음·수표의 공중 등)에 의한 다음 어음의 금원지급을 연체할 경우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없다는 취지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촉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자기계약 및 쌍방대리를 승락함.)

액면	금	원정 (₩)
발행일		발행인
지급기일		수취인
발행지		양도일
지급지		양도인
지급장소		양수인

년 월 일

위임인	성명 주소 (인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감)
위임인	성명 주소 (인감)